

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검토보고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901호, **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 및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운용계획에 반영하고, 공사 용자지원을 위한 정책사업 신설을 위해,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 내부거래 조정에 따른 예수금 및 예탁금 변경 내역 반영
- 나.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반영

다. 교통공사 재정지원을 위한 '투자기관 금융지원' 정책사업 신설

라. 시금고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수입 및 이자상환 증감액 반영

마. 운용규모 : 1,400,734백만원(당초 계획 대비 358,204백만원 감소)

<수입계획 변경내역 >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당 초 (A)	기 금 운 용 계획 변경안(B)	증 감 (C = B - A)	증 감 율 (D = C / A)
합 계	1,758,938	1,400,734	△358,204	△20.4
용 자 금 원 리 금 회 수	16,858	6,067	△10,791	△64.0
예 수 금	1,374,150	1,128,694	△245,456	△17.9
예 탁 금 원 금 회 수	13,920	13,920	-	-
이 자 수 입	36,428	41,010	4,582	12.6
예 치 금 회 수	317,582	211,043	△106,539	△33.5

<지출계획 변경내역>

(단위: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 / 편성목	당 초 (A)	기금운용계획 변경안(B)	증 감 (C = B - A)	증 감 율 (D = C / A)
합 계	1,758,938	1,400,734	△358,204	△20.4
투자기관금융지원	-	150,000	150,000	-
공사용자지원	-	150,000	150,000	-
공사직접용자	-	150,000	150,000	-
용자금	-	150,000	150,000	-
재무활동	1,758,931	1,250,727	△508,204	△28.9
내부거래지출	1,401,820	1,069,007	△332,813	△23.7
기금특별회계용자지원	1,401,820	1,069,007	△332,813	△23.7
예탁금	1,268,100	943,340	△324,760	△25.6
예수금원리금상환	133,720	125,667	△8,053	△6.0
보전지출	357,111	181,720	△175,391	△49.1
여유자금예치	357,111	181,720	△175,391	△49.1
예치금	357,111	181,720	△175,391	△49.1
행정운영경비	7	7	-	-
기금관리비	7	7	-	-
기금관리비	7	7	-	-
일반운영비	7	7	-	-

○ 수입계획변경

- 용자금 원금회수 8,700백만원 감소 (8,700백만원→0)
 - ▶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에너지 공사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상환기한 도래 용자금 용자기간 연장
- 용자금 회수 이자수입 2,091백만원 감소 (8,158백만원→6,067백만원)
 - ▶ 시금고 금리 변동 내역 등 반영 ('22년 12월 4.90% → '23년 5월 4.07%)

- 예수금 245,456백만원 감소 (1,374,150백만원→1,128,694백만원)

▶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 내부거래 조정에 따른 예수금 수입 조정

-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197,700→179,044(△18,656)
-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: 5,600→50,000(증44,400)
-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: 441,600→420,000(△21,600)
-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 : 265,500→214,100(△51,400)
- 도시개발특별회계 : 256,100→50,700(△205,400)
-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: 26,400→33,700(7,300)
-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:1,250→1,150(△100)

- 이자수입 4,582백만원 증가 (36,428백만원→41,010백만원)

▶ 공금예금 및 정기예금 규모 변동 반영 등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

- 예치금 회수 106,539백만원 감소 (317,582백만원→211,043백만원)

▶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감소

○ 지출계획변경

- 용자금 150,000백만원 증가 (0→150,000백만원)

▶ 교통요금 인상시기 조정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재정지원을 위해 용자금 증가

- 예탁금 324,760백만원 감소 (1,268,100백만원→943,340백만원)

▶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 내부거래 조정에 따른 예탁금 수입 조정

- 일반회계 : 439,700→420,200(△19,500)
-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: 204,200→227,540(증23,340)
-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 : 624,200→295,600(△328,600)

- 예수금 이자상환 8,053백만원 감소(51,671백만원→43,618백만원)

▶ 시금고 금리 변동 내역 등 반영

- 예치금 회수 175,391백만원 감소 (357,111백만원→181,720백만원)

▶ 수입·지출 변동을 반영하여 예치금 감소

Ⅲ. 검토의견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'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'2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운용계획에 반영하고, 공사 용자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을 신설하고자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 - 제출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의 수입계획은 **예수금**¹⁾(△2,454억 5,600만원), **예치금 회수**²⁾(△1,065억 3,900만원), **용자금 원금회수**³⁾(△87억원), **용자금 회수 이자수입**⁴⁾(△20억 9,100만원)을 감액조정하고 **이자수입**⁵⁾(45억 8,200만원)을 증액조정 하는 것이며
 - 지출계획은 **예탁금**⁶⁾(△3,247억 6,000만원), **예수금 원리금상환**⁷⁾(△80억 5,300만원), **예치금**⁸⁾(△1,753억 9,100만원)을 감액 조정하여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**의 지출액을 당초(1조 7,589억 3,100만원)보다 △28.9%, △5,082억 400만원 감액된 1조 2,507억 2,7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, 정책사업인 **투자기관금융지원**을 신설하여 공사 용자지원⁹⁾을 위한 용자금 1,500억원을 순증하려는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¹⁰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

-
- 1) '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부거래 조정에 따른 예수금 수입 조정
 -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1,977억원 → 1,790억 4,400만원(△186억 5,600만원)
 -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: 5억 6,000만원 → 50억(44억4,000만원)
 -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: 4,416억 → 4,200억(△216억)
 -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 : 2,655억 → 2,141억(△514억)
 - 도시개발특별회계 : 2561억 → 507억(△2,054억)
 -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: 264억 → 337억(73억)
 -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: 12억 5,000만원→ 11억 5,000만원(△1억원)
 - 2)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감소
 - 3)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에너지 공사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용자금 용자기간 연장
 - 4) 시금고 금리 변동 (22년 12월 4.90% →23년 5월 4.07%)
 - 5) 공금예금 및 정기예금 규모 변동 반영등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
 - 6) '2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부거래 조정에 따른 예탁금 수입 조정
 - 일반회계 : 4,397억→4,202억(△195억)
 -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: 2,042억→2,275억 4,000만원(증233억 4,000만원)
 -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 : 6,242억→2,956억(△3,286억)
 - 7) 시금고 금리변동 내역 등 반영
 - 8) 수입·지출 변동을 반영하여 예치금 감소
 - 9) 교통요금 인상시기 조정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재정지원을 위해 용자금 증가

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,

- ①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(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)**은 당초 지출액(1조 7,589억 3.100만원)보다 △28.9%, △5,082억 400만원 감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- ②**투자기관금융지원**을 정책사업으로 신설하여 서울교통공사 재정지원을 위한 용자금 1,500억원을 순증하고자 지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이나,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없던 정책사업을 100% 순증한 것으로서 의회 보고 및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〈표 3-1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출계획 변경내역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 책 사 업 / 세 부 사 업	당초 (A)	기금운용계획 변경안 (B)	증 · 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지 출 합 계	1,758,938	1,400,734	△358,204	△20.4
투 자 기 관 금 용 지 원	-	150,000	150,000	-
용 자 금	-	150,000	150,000	-
재 무 활 동	1,758,931	1,250,727	△508,204	△28.9
예 탁 금	1,268,100	943,340	△324,760	△25.6
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	133,720	125,667	△8,053	△6.0
예 치 금	357,111	181,720	△175,391	△49.1
행 정 운 영 경 비	7	7	-	-

※ 자료근거 :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출계획, ②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('23. 5.30) 재구성
 ○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투자기관금융지원의 경우 관련, **응**

10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자금을 편성하여 서울교통공사에 융자금 1,500억원을 지출계획한 것으로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¹¹⁾에 따른 지출계획으로 사료되나

- 행정안전부의 「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¹²⁾이 정하는 **공사·공단 등 융자금**은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(지방채)을 통해 지방공사·공단에 융자하는 융자금으로
- 매출공채 즉,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만 **공사·공단 등 융자금**이 편성되는 지출과목으로 '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 등을 **공사·공단 등 융자금**으로 편성하여 지출하려는 예산과목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
- 서울교통공사 재정지원을 위해 융자금을 편성한 투자기관금융지원은 매출공채 등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출가능한 법정사항이라는 점에서 지출계획한 **융자금**은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한 세출과목으로 판단됨

11)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(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)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
2. 공기업으로의 융자
3. 예수금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
4. 그 밖에 통합 계정의 운용·관리를 위한 경비

12) 행정안전부, 「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, p.121